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행정안전부

KISA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Contents

제1장

개인정보 침해구제 개요

6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의의 및 침해구제의 필요성 6
- 2. 개인정보 침해구제 절차 8
- 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행정안전부 11

제2장

2008년 개인정보 침해구제 현황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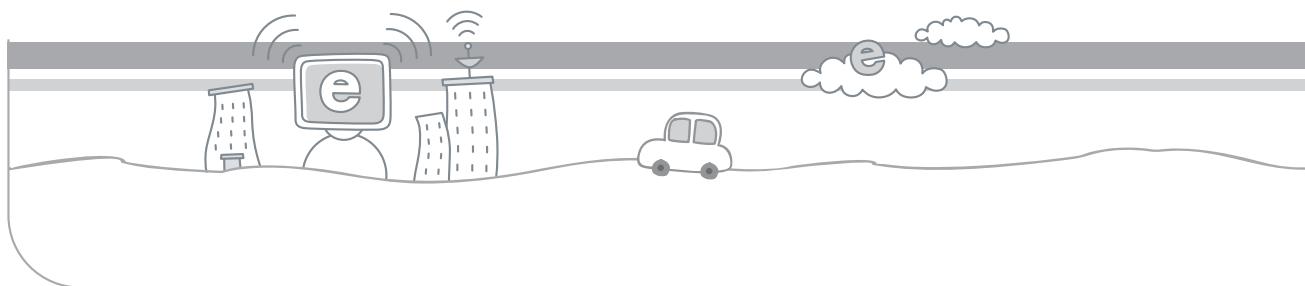
- 1. 접수 및 조치현황 16
- 2. 유형별 세부내용 17

제3장

2008년 주요 침해구제 사례

22

- 1. 위법성 확인 사례 22
- 2. 기타 31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제4장

개인정보 침해 주요 상담사례 및 법령 질의회신

40

1. 공공부문 상담의 주요특징	40
2. 개인정보 침해 주요 상담 사례	41
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령 주요 질의회신 사례	70

| 부록1 | 민간부문 개인정보 침해 상담사례 96

| 부록2 |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처벌규정 108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제1장

개인정보 침해구제 개요

1.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의의 및 침해구제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침해구제 절차
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행정안전부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제1장

개인정보 침해구제 개요

1.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의의 및 침해구제의 필요성

1)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의의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중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등을 진술하면서 고충처리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신고”의 개념에는 넓게는 민원인이 입은 고충의 해결, 피해의 보상, 위법사실의 제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요구 등이 모두 포함되나, 좁게는 위법사실의 제보 및 행정처분의 요구만이 포함된다.

※ “고충민원”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행정제도로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진정, 탄원, 건의, 질의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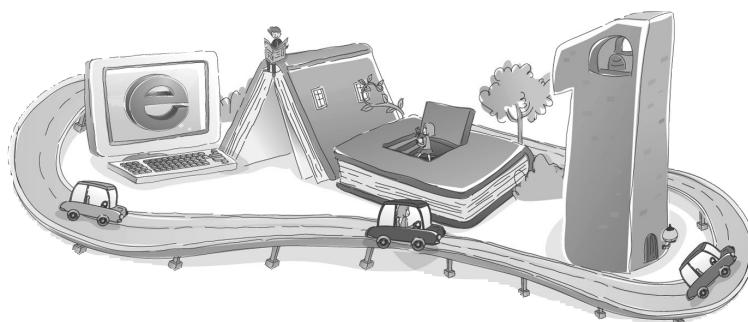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는 모두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대상이 된다.

2) 개인정보 침해구제의 필요성

과거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순한 의미였으나, 오늘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전자상거래·금융거래 등 기업 활동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가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사회 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고, 그 규모면에서 대규모로 수집·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성도 증가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의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구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발전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절차 및 사전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될 수 없으며, 건전한 지식정보사회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2. 개인정보 침해구제 절차

1) 개관

국내의 개인정보 침해구제는 정보통신, 금융, 의료 등 각 개별분야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 행정부처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구 등이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역할을 나누어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구제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11월 행정안전부내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

'08. 7월부터는 그간 공공·민간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가 이원화되어 국민이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공·민간 개인정보침해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단일접수전화 ☎1336을 운영 중이다

2) 개인정보침해 신고처리 절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상담·신고에 따른 고충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담의 경우 7일 이내, 신고처리의 경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있다.

향후 '09년부터는 사실확인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시정조치기간을 12일에서 6일로 최대한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1) 사건의 접수 및 통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또는 신고는 웹사이트(www.1336.or.kr), 전화(국번없이 1336), 팩스(02-405-4736), 이메일(privacy@kisa.or.kr), 우편·방문(서울 송파

구 가락동 78번지 IT 벤처타워 서관 4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고충처리 요청 및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된다. 이와 별도로 신청인이 민사적 피해보상 등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침해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사실확인이 필요사안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한다.

(2) 사실조사 및 조치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에 대해서는 이관 받는 즉시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침해를 유발하는 제도·관행의 개선, 국민의 신속한 고충해결, 담당자 징계 등 시정을 권고하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3) 이용방법

누구든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이나 피해를 겪은 경우에는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신고,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송 절차

업무순서	업무 내용	처리기한
신고접수 확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	즉시
증빙자료 확보	■ 사실조사 및 법령위반사실 증빙자료 취합 - 사실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민원인 제출자료 및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하여 증빙자료 확보	접수당일
신고접수 통보	■ 피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접수 안내문서 작성통보	신고 담당자 접수후 8시간 이내
이송문서 통보	■ 행안부 담당부서에 이송통보 시행문을 기안하여 팀장 결재를 득한 뒤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서로서 통보	
후속조치	■ 담당자는 해당 사건을 민원DB에 기록 ■ 담당자는 이송통보 대장을 작성·보관	이관후 즉시

* 민원인의 연락지연 등으로 증빙자료 및 인적사항 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처리기한보다 지연될 수 있음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 개인정보침해 상담 · 신고 · 분쟁조정 신청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36, ARS 3번
인터넷	www.1336.or.kr
우편 · 방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 4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우편번호 : 138-803)
팩스	02-405-4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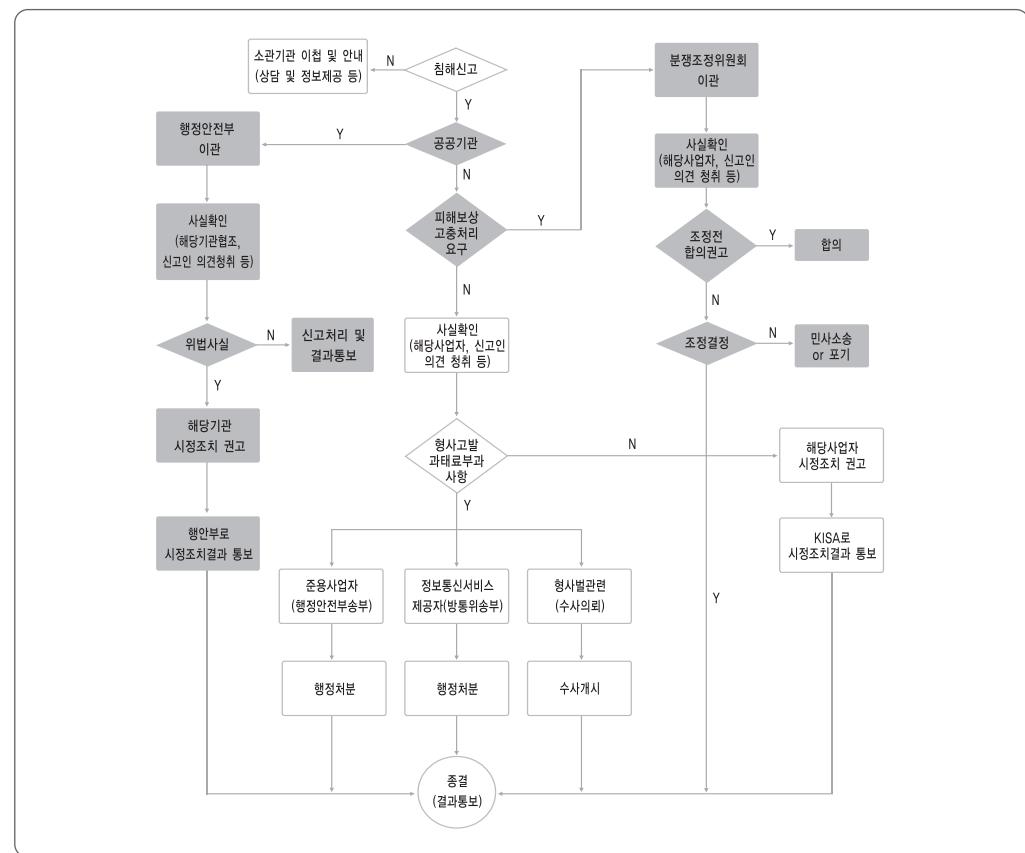
[전화상담 가능시간]

◆ 월~금 :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휴무일 : 토 · 일요일 · 법정 공휴일

※ 인터넷을 통한 상담 · 신고는 연중 1일 24시간 가능

■■■ 개인정보침해 상담 · 신고 · 분쟁조정 신청방법



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행정안전부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하여 2004년 4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설치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개인정보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 개인정보침해관련 대책연구
- 개인정보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고충처리 및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ID 등에 의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른 정보 침해로 인한 것이면 모두 침해상담·신고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일부 오프라인(off-line) 사업자에 대해 적용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주로 이들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규제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07.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접수 및 처리를 하였으며, '08. 7월부터는 공공·민간 개인정보침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단일접수전화 ☎1336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에 대해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부터 이관 받는 즉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침해를 유발하는 제도·관행의 개선, 국민의 신속한 고충해결, 담당자 징계 등 시정을 권고하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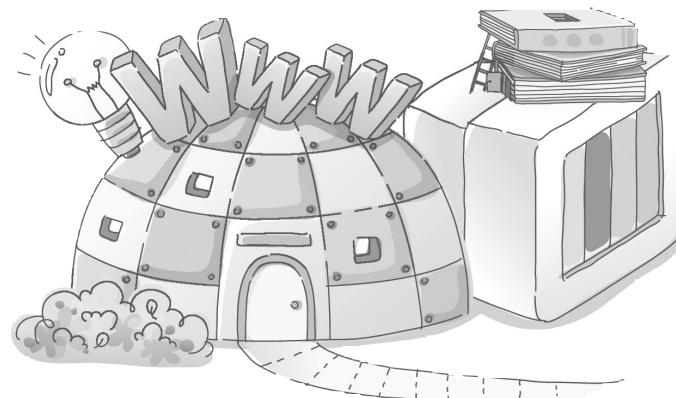
다만, 민간부문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주로 정보통신사업자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담당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접수받는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사업자에게 침해를 유발하는 제도·관행의 개선, 이용자의 신속한 고충해결 등 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동일 침해가 반복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준용사업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법 위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과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 사실조사권한

구분	내용	법률 근거
조사권한 범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접수된 침해사실에 대해 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2
주요 내용	1. 자료제출요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2. 실태조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3. 협조요청	관계기관에 대해 협조요청
	4. 의견청취	침해사실신고자 등의 의견 청취
조사불응시 조치	법률 위반으로 징계요구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제2장 2008년 개인정보 침해구제 현황

1. 접수 및 조치현황
2. 유형별 세부내용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제2장

2008년 개인정보 침해구제 현황

1. 접수 및 조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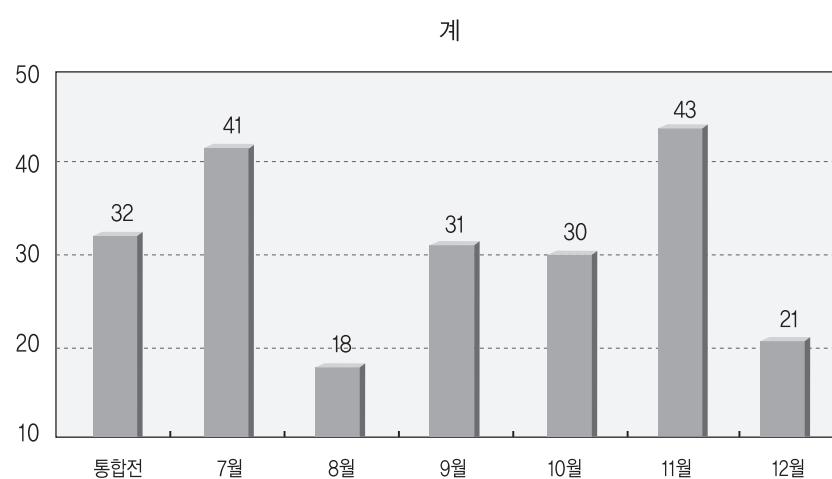
'07.11.18 ~ '08.12.31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은 총 216건으로,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는 주 평균 약 4.1건이 접수되었다

('07.11.18~현재)

총계	처리결과			
	상담 및 자료제공	타기관 이송	위법성 통보	기타
216	168	4	20	12

* '08.7.1자 통합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336)의 개소로 인한 홍보 효과로 184건으로 통합전보다 6배 가량 증가

■■■ 공공 · 민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통합후 월별 접수실적



2. 유형별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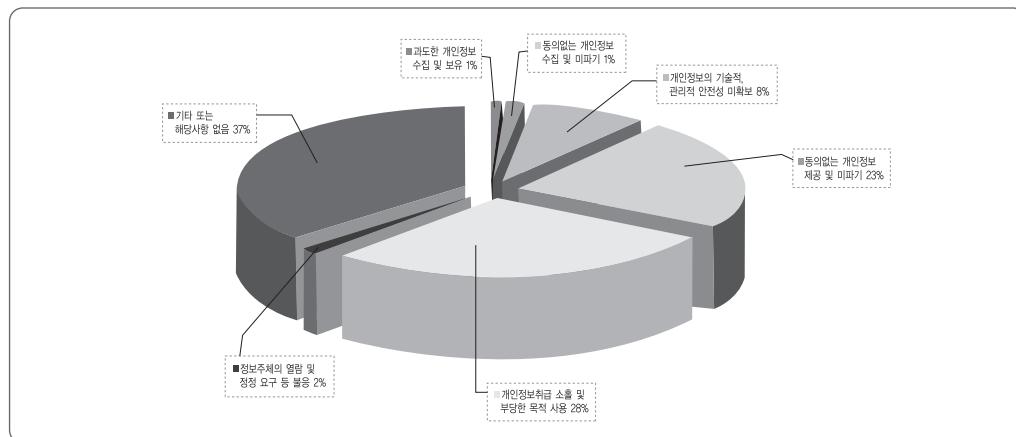
1) 신고방법별 접수현황

'08.7.1자 통합전 개인정보침해 신고 접수 시에는 전화상담은 미포함하였으나, 통합 후에는 전화 신고 및 상담비율이 184건 중 96건으로 52.2%를 차지하였다.

구 분	통합전	통합후	총 계
인 터 넷	29	82	111
전자우편	-	5	5
전 화	-	96	96
팩 스	-	-	0
우 편	1	1	2
방 문	2	-	2
총 계	32	184	216

2) 침해유형별 접수현황

주요 침해행위는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취급 소홀 및 부당한 목적 사용이 216건중 61건(28.2%)을 차지하였으며, 신고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 및 미파기 기에 의한 침해가 49건(2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 ■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침해유형

개인정보침해유형	근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제3조의2, 제5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적 근거없는 민감 개인정보 수집	제4조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을 후 개인정보 미파기	제4조
CCTV 설치시 사전의견수렴절차 미실시 및 안내판 미설치	제4조의2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변경시 사전협의 미실시	제6조
개인정보보호방침의 미게시	제7조의2
개인정보파일대장의 미비치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	제9조제1항
위탁시 안전성 미확보, 처리절차 미준수 및 위탁사실 미공개	제9조제2~4항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미확보	제9조제2항
법률 근거없거나 정보주체 동의없는 보유목적외 이용 · 제공	제10조제1항, 제3항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한 보유목적외 이용 또는 제공	제10조제2항
개인정보제공시 필요최소한 제한 및 안전성확보조치 미요청	제10조제4항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 재제공	제10조제5항
보유목적외 목적으로 이용, 제공시 확인가능하도록 미게시	제10조제6항
보유목적 달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파일의 즉시 파기 조치 미이행	제10조의2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부당한 목적 사용 –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 – 타인의 이용에 제공	제11조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 삭제요구 등 불응	제12조,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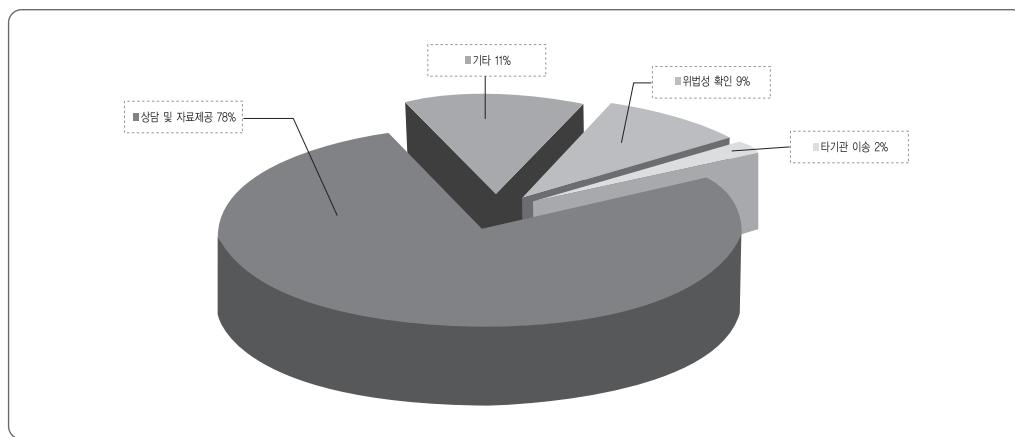
3) 침해대상기관별 접수현황

침해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216건중 76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08. 7.1 자 통합후 전화상담시 대상기관을 밝히지 않거나, 침해받았으나 대상기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216건중 52건(24.0%)을 차지하였다

구 분	통합전	통합후	총 계
중앙행정기관	10	17	27
공공기관	5	30	35
지방자치단체	13	63	76
교육기관	1	25	26
기타 (불명 등)	3	49	52
총 계	32	184	216

4) 처리결과에 따른 접수현황

사실확인조사를 통한 위법성 확인 20건, 기타 24건으로 총 216건중 44건(20.4%)이며, '08. 7.1자 통합에 따라 상담 및 자료제공이 총 216건중 168건(77.8%)으로 신고 및 처리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제3장 2008년 주요 침해구제 사례

1. 위법성 확인 사례

2. 기타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제3장

2008년 주요 침해구제 사례

1. 위법성 확인 사례

1)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조치 미흡

(1) 사례 1

■ 신고개요

신고인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지 않고 예매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비회원이라도 예매내역이 간단히 조회되는 점에 대하여 개선 요청함

■ 사실확인결과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하여 비회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예매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조치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 제3자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로 예매내역 조회가 가능한 점은 개인정보 침해의 개연성이 높아 해당 홈페이지의 비회원 예매내역조회 서비스는 다소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해당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고유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안 등 개선예정(’09년도)임

(2) 사례 2

■ 신고개요

해당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약관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회원ID로 이용하고 회원탈퇴 방법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이를 신고함

■ 사실확인결과

해당 홈페이지는 현재 리뉴얼 과정중으로 이용약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학기간에 맞추어 임시 오픈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회원ID로 사용하고 회원가입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회원탈퇴 방법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조치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호조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회원ID로 이용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보주체가 수집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동법 제6조, 제7조의2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수립하여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음

해당 기관에서는 회원아이디로 주민등록번호이용을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게시함과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수탁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함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열람 · 정정 요구불응****(1) 사례 1****■ 신고개요**

신고인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어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불응하여, 이를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함

■ 사실확인결과

해당 기관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신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 정정요청을 받았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함.

■ 조치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보유기관의 장은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 휴대전화번호 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정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신고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사실확인결과에 따라 신고인 개인정보 완전삭제 조치함

3)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1) 사례 1

■ 신고개요

신고인은 자녀의 학습지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서비스를 신청당시 ○○학습지로 신청하였으나, 관계없는 타 업체로부터 광고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수신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로 신고함

■ 사실확인결과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시·군·구에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서비스를 신청 받아 지원해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08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시·군·구에서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서비스대상자와 서비스제공업체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해 이용료 결제도록 되어 있음

해당 기관에서는 신고인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서비스의 미이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체(8개)에게 개인정보(자녀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서비스 신청 당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도록 한 사실은 없음.

■ 조치사항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서비스는 선정된 서비스대상자가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업체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기관의 서비스제공업체(8개)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행위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시정하도록 권고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2) 사례 2

■ 신고개요

신고인은 보건소에 치과의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보건소 담당자가 신고인의 전화번호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여 이를 신고함

■ 사실확인결과

해당기관에서는 신고인이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제출시 기재한 자택전화번호를 제3자인 환자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폐업신고 후 진료기록부를 자체보관하고 있는 의료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조치사항

본건은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기관에 향후 시정하도록 권고함

이에 각 보건기관에서는 폐업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자체보관 허가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연락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는 동의서 등을 징구토록 조치함('09.1월)

4) 자기정보결정권 침해

(1) 사례 1

■ 신고개요

신고인은 A포털부터 메일을 수신한 건과 관련하여 이는 회원 가입한 구청 사이트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포털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메일에는 수신거부관련 사항, 발송자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인정보침해로 신고함

■ 사실확인결과

신고인은 B홈페이지 회원가입('05.8월) 당시 “타 행정기관과의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으며, A포털의 통합회원정보 연계 협조요청을 받아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한 자료를 제공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임.

※ 신고인 가입('05.8월) 당시에는 공동이용기관을 명시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또한, A포털은 '08.9.11자 안내메일 발송시 발송자정보, 수신거부관련 등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 인정함.

■ 조치사항

B홈페이지는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한 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회원가입시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얻고, 타 기관과 정보공유에 대해 고지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

※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 행정기관간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A포털은 발송자정보, 수신거부관련 등이 누락된 채 안내메일이 발송된 사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바, 해당 기관에서는 침해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안내메일 발송시 발송자정보, 수신거부관련사항 등 기재 조치함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2) 사례 2

■ 신고개요

6년 전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가 상실된 前 시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보험계약 등 정보를 면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회한 사실에 대해 권한 없는 조회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로 신고함

■ 사실확인결과

신고인의 전 시어머니는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부터 기초생활법상 수급자로 결정되었으며, 당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는 미징구함에 따라 '07년까지 신고인의 금융자산조사는 미실시하였음.

해당기관은 금융정보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08.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급자 선정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08. 8월부터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산방식으로 금융재산을 조회토록 시달 받은 바 있음. ('08.6.2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2 (금융정보의 제공 등)

– 확인조사 담당자는 대상자의 '동의서' 없이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

따라서, 공문 시달이후 전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하기 전에 – 보건복지부로부터 새울행정시스템상 부양의무자인 신고인의 자료가 추출되어 금융기관에 조회요청된 것임

■ 조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서 없이 금융정보의 조회요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가족관계기록사항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신고인이 6년 전 이혼으로 인하여 법상 부양의무자의 지위가 상실된 상태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금번 금융정보의 조회 요청으로 인하여 신고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침해사실 확인결과에 따라 신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삭제처리 및 정비, 신고인의 금융정보조회결과에 대해 복지부 삭제요청 및 담당자 훈계조치 시행함

5) 개인정보취급자 의무위반

(1) 사례 1

■ 사건개요

신고인은 본인의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준 적 없는 자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으며, 이는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불법으로 열람하여 ○○에게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신고함

■ 사실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시 직원이 업무 목적외로 열람한 사실을 확인함

따라서, 시 직원이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불법으로 열람한 것이 확인된 바,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3조의 권한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였음.

※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에 대하여는 확인 못함

■ 조치사항

해당 기관에서는 침해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조치함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2) 사례 2****■ 신고개요**

신고인은 자신이 민원 제기한 건과 관련하여 해당기관 담당자가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주소 확인후 직접 방문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하여 신고함

■ 사실확인결과

해당기관 담당자가 권한 없이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등록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개인 주소지를 파악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조치사항

해당 기관에서는 사실확인결과에 따라 담당자 구두훈계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함

2. 기타

1) 제3자 제공 관련 권고

■ 사건개요

신고인 소유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한 내용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에 그대로 전달된 바, 이는 세무서가 과세자료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 사실확인결과

탈세제보는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지까지 국세청의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2조(처리진행상황 및 결과통지)에 따라 제보자에게 탈세제보결과를 통지한 바 있음.

※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 제32조 (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 통지)

③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는『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제보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다른 관서에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이거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인의 부동산 취득관련 소명내용이 탈세제보자에게 통지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사항”란 명기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조치사항

신고인의 부동산 취득관련 소명내용이 탈세제보자에게 통지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사항”란 명기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는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별지 제11호 서식)

탈 세 제 보 자 료 처 리 결 과 통 지

분류기호 :

一一〇

제 목 :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

피제보자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처리 결과	처 리 구 분	조 사 내 용			
		과세연도	세목	추징세액	벌과금

2) 동의 없이 목적외로 이용 관련 권리

(1) 사례 1

■ 신고개요

신고인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가입자로 IP의 이용자가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홈페이지에 실명인증한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사 요청함

■ 사실확인결과

해당 IP는 전자정부통합망을 이용하는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에 할당된 외부 IP로, 네트워크 방화벽의 접속로그 검색 결과 A홈페이지 담당자로 확인됨.

신고인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클린캠페인에 신청한 바 있으며, 당시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음.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신고인의 회원탈퇴 요청을 받아 해당 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바 있으며, A홈페이지 담당자는 회원 탈퇴 처리할 목적으로 신고인의 아이디를 검색하기 위하여 실명인증한 사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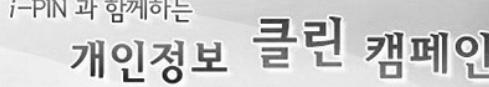
■ 조치사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개인정보 클린캠페인 신청시 개인정보를 해당 웹사이트에 제공사실 고지 및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

해당 홈페이지 담당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실명인증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신고인의 요청을 받아 회원 탈퇴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 [별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제공 안내



**i-PIN 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 계정에 대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탈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탈퇴를 신청하는 해당 웹사이트의 정책 및 약관, 계약 내용에 따라 탈퇴 원료 시 각 종 아이템, 사이버 머니, e-메일, 블로그 등의 삭제, 제휴 웹사이트의 일괄 탈퇴, 해당 웹사이트의 모든 계정(ID) 삭제, 환불 수수료 부과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FAQ의 4번을 참조하세요. [\[FAQ 바로가기\]](#)

탈퇴신청시 주의사항

1. 조회하실 주민등록번호와 결과를 동보받을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본인이 조회할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처리 결과를 받으실 메일 주소 입력)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는 회원가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용으로 사용됩니다.

2. 탈퇴를 신청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해지 요청을 위해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은 귀하의 성명, 주민번호를 해당 웹사이트에 송부합니다.

1. 귀하께서 탈퇴시 요청하신 웹사이트의 정책 및 약관, 계약 내용에 따라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외에 가입하신 아이디별로 생성된
다음의 정보가 삭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① 각 종 아이템, 캐릭터, 사이버머니, 캐쉬,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등의 삭제
- ② 이메일 내용, 블로그, 카페, 개인홈페이지, 기타 아이디와 연계된 모든 사적인 영역의 정보와 게시물의 삭제
- ③ 해당 웹사이트와 연계된 제휴업체밀리 사이트 등의 일괄 탈퇴
- ④ 환불 수수료 부과, 소송·잔액의 미환급
- ⑤ 한 사람이 복수(2개 이상)의 아이디(계정)를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된 모든 아이디(계정)의 삭제
- ⑥ 기타 해당 웹사이트의 정책, 약관 등에서 정하는 정보

※ 복수 아이디 중 하나의 아이디의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웹사이트 회원 탈퇴를 위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귀하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송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귀하께서 입력하신 이메일로 i-pin 및 캠페인 설문조사 내용을 송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확인\(탈퇴요청\)\]](#) [\[취소\]](#)

(2) 사례 2

■ 신고개요

신고인은 우체국에서 등기발송한 사실이 있는 자로, 등기발송 기록에서 추출한 우편주소로 본인의 동의 없이 우체국 보험관련 홍보물을 발송(08.4.21)한 점에 대해 개인정보침해로 신고함

■ 사실확인결과

해당기관에서는 신고인의 우편주소로 우체국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며, 정보주체에게 비영리 국가기관으로서 우체국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함

■ 조치사항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위법성은 없으나

- 폭넓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전연락없이 신고인을 직접방문한 행위는 다소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해당기관은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홍보성 우편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 시행함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4) 보유목적내 이용관련 권리

(1) 사례 1

■ 신고개요

신고인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로 해당약국에서 약 조제를 받은 후에 약품 수량에 차이가 있어 항의한 바 있으며, 이후 약국에서 집전화, 휴대폰으로 전화온 건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신고인의 연락처, 집주소 등을 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개인정보침해로 신고함

■ 사실확인결과

약국에서는 신고인이 약품수량에 항의하자 다시 조제한 약을 전달하고자 해당 보건소에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바 있으며, 해당 보건소에서는 신고인의 진료기록 프로그램 상에 기록된 집주소, 휴대폰번호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의료행위 등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조치사항

해당 보건소에서 신고인의 연락처, 주소를 해당 약국에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되나, 이는 신고인에게 투약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의 일부라고 사료됨

※ (대법원 판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유기관은 보유목적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해당기관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보유목적내 이용”에 해당된다 고 사료됨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병력) 및 가족력(가족력)
-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전
-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라. 진료 일시분(일시분)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2) 사례 2

■ 신고개요

신고인은 희귀성 난치질환자로서 신고인의 병력이 요양기관인 일반병원, 약국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간단히 조회된다는 점에 대해 신고함과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 시 관련 내역의 삭제가 요양기관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제도개선 요청함

■ 사실확인결과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희귀·난치성 질환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등록신청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의서 하단 “타기관과의 공동이용”에 DB자료를 보험공단 및 요양기관에 제공됨을 명시함

요양기관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접속시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을 입력하면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코드는 조회가능하나, 그외 타 병력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며,

-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처리 익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의 관련자료를 삭제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조회 불가능함

(별지 제4호 서식)

희귀·난치성 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시·도(시·군·구)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p>본인은 ()년 ()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p>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정책개발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하며, 동 사업과 관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활용

○ 이용방법

-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질병코드 등)하여 의료비지원 신청·지급 및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동 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공받은 의료정보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개선 및 관련 정책개발에 사용

○ 타 기관과의 공동이용

- DB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며 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제공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의료비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02-380-2221)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화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장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제4장 개인정보 침해 주요 상담사례 및 법령 질의회신

1. 공공부문 상담의 주요특징
2. 개인정보 침해 주요 상담 사례
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령 주요 질의회신 사례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제4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사례 및 법령상담

1. 공공부문 상담의 주요 특징

공공부문 상담은 공공기관,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이용자 관계가 성립되는 이용자의 상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용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질의가 상당수 포함되며, 공공기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의 취급 전반에 걸친 사항을 질의하고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면서,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무단 조회 및 사용, 해킹, 유·노출, 제3자 제공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명의 도용, 명예 훼손, 해킹, 보이스피싱, TM 등 인터넷과 전화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침해로 오인하여 질의하는 사례가 아직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례 1**홈페이지에 학생 사진 게재시 침해 여부****상담 내용**

시상을 받는 학생의 사진일 경우 학년반과 이름이 함께 게재되고,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동들의 댓글을 통해 이름이 밝혀지기도 하는 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 침해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학생의 사진정보는 학교명, 성명, 학년, 반, 거주지역 등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있으며 학생 사진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서 학생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후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됨

이와는 별도로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사의 사진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담당 교사의 성명 및 직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는 직무의 수행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정보공개 행위로서 공개대상에 해당될 수 있지만 사진정보에 대하여서는 공개의 의무가 없으므로 교사의 사진정보의 게재는 학생 사진정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동의를 얻은 후 홈페이지에 게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2**사망한 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률 적용 여부**

Q&A

**상담 내용**

현혈당사자가 사망한 이후 당사자의 부모님이 정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족관계 등을 확인후 정보제공할 수 있는지를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따라서 사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타인의 정보 등이 함께 기재되어 관련자의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침해 사안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3**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상담 내용**

○○단체부터 일자리정보를 통지받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관련 없는 문화공연행사 일정 등에 관한 SMS문자가 수신되고 있어 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함

**답변**

문의한 ○○단체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적용 대상이 아닌 바, 본건과 관련하여 직접 SMS 수신거부를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개인정보보호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문의한 경우처럼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함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4**자동차 공동명의인 주민등록번호 보호조치****Q&A****상담 내용**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소유자2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특이 사항란에 노출되어 있는 바, 공동소유 차량등록시 차량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개선을 요구함

**답변**

차량의 공동소유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소유인1인의 주민번호는 보호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공동소유인1인의 주민번호는 특이사항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보임

따라서 문의한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측은 「주민등록법」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전산자료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할 사안임

사례 5**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시 조치사항**

Q&A

**상담 내용**

검색엔진 등을 통하여 개인 정보가 혹시나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던 중에 본인 및 지인들의 이름과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페이지들을 발견하게 되었는 바, 현재 수많은 중국 사이트들에 2001년도 ○○ 경시대회 수상자들의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어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노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삭제 조치가 필요함

제
4
장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6

본인확인절차 없는 성적공개의 침해여부

Q&A



상담 내용

적성시험 성적 발표 하루전에 협회 측에서 제1회 ○○ 적성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개인정보 및 점수 등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침해 사안인지 여부를 문의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협의회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가 미비한 점에 대하여 향후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임

사례 7**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열람의 침해여부****상담 내용**

현재 교제중인 여자친구의 가족이 ○○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과거 경력 및 현재 직업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현재 교제 중이므로 조사를 원하기 보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가 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문의함

**답변**

개인정보를 열람한 자에 대한 내역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해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공개로 결정된 사항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요청하는 경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열람 내역 조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신청인 내역이 상대방에게 통지되고 있으므로 추후 신고 또는 신청 시 참고바람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8**동의없는 주소노출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여부****Q&A****상담 내용**

자녀가 초등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본건과 관련하여 학교장과 가해부모가 본인의 동의없는 상태에서 자택으로 찾아온 바,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주소지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 볼 수도 있지만 학교교장과 가해자의 자택 방문행위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의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사례 9**성적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침해인지 여부**

Q&A

**상담 내용**

중등학교에서는 학년별 정기고사 실시 후 전산화된 성적 및 결과 처리(각 교과별 점수와 종합 성적)를 개인들이 확인하도록 함.

본인의 점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점수도 출력되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에서 “개인정보”로 정의하는 범위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성적표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임

성적의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 외 이용 · 제공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제
4
장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10

행사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위탁시 침해 여부

Q&A



상담 내용

○○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 초대 메일에 표시된 연락처로 문의를 하니 메일 발송회사는 컨퍼런스 대행사임.

해당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대행사에 넘겨주고 메일을 발송하게끔 한 내용이 합법인지 여부를 문의함



○○ 진흥원에서 컨퍼런스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메일계정 주소로 컨퍼런스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는 보유목적내 이용(개인정보의 위탁)이라고 사료되는바, 개인정보의 주체인 메일계정의 소유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고로 공공기관의 장은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사례 11**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제공시 법률 위반여부**

Q&A

**상담 내용**

○○ 기관 노사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추진에 상호 동의하고 퇴직연금TFT를 구성·운영 중이며, 원활한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해 퇴직연금컨설팅사업자를 선정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컨설팅 약정서를 체결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노사합의하에 퇴직금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개인정보파일을 퇴직연금컨설팅사업자에게 제공한 업무는 보유목적내 이용(개인정보의 위탁)이라고 사료되는바, 개인정보의 주체인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기는 어려움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
4
장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12

무허가건물 매매관련 열람 청구 불응

Q&A



상담 내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 준비를 위해 매수자에 대한 성명과 주소지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요청을 하였으나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바, 구청측의 제공 거절 근거 및 정보 확인방법을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처리정보의 열람과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해당 무허가 건물이 1차 매매만 이루어 졌다면 본인의 거래정보이므로 상대방의 정보 확인이 가능함. 다만, 2차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만약 정보열람청구를 한다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정보열람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에 의한 열람청구의 대상이 아님

또한, 동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기관 즉, 구청에서는 동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도록 하고, 비공개결정시에 그 이유에 대하여도 통지도록 되어 있음.

사례 13**CCTV 운영시 녹취기능 사용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Q&A

**상담 내용**

위급 상황 등 특수 상황 발생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해당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은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CCTV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녹음기능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다만 당사자가 비상벨을 누르고 녹음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이 사전 고지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14

교육자재용 CCTV 설치시 법률 적용 여부

Q&A



상담 내용

교육기관에서 전시실을 꾸며놓고, PC와 화상 캠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해 두었음.

평상시에는 지나다니는 화면을 보여주기만 하고 화상정보를 저장하지는 않고 있음. 다만 학생이 직접 PC 조작을 통하여 사진을 찍도록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CCTV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화상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동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컴퓨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 · 저장 · 편집 · 검색 · 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교육목적의 교육기자재에 해당되므로 CCTV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화상정보가 입력 즉 촬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15 고지서 교부 절차 관련하여 침해 여부**상담 내용**

통장과 반장들이 교부하는 지방세 고지서 출력물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이름, 주소, 성별, 과세번호, 과세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를 문의함



「○○시의 관련 조례」 제19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조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 제39조의 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송달 과정에서 교부사실 확인을 위한 리스트(주민등록번호 앞부분과 이름, 성별, 주소, 과세번호 등이 기재)는 동명여부의 가능성, 주소지 미이전의 가능성, 과세체납 및 과세금액의 변경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이 시 조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송달된 사항이라면 위법사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16

동의없는 제공행위에 대한 법 적용 여부

Q&A



상담 내용

공공기관이 본인 동의없이 가족에게 직장정보를 알려 준 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에서 개인정보로 정의하는 범위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직장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개인정보의 주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관으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과 함께 서면청구할 수 있음

사례 17**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확인 가능 여부**

Q&A

**상담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확인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은 보유목적외로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방법을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기관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서면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참고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에게 문의 요망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18

법정서식에 없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침해인지 여부

Q&A



상담 내용

관공서에서 서식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낸 경우, 또는 관공서 서류를 다른 사람이 개봉하여 본인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침해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개인정보유출은 타인에게 제공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아닌 정보 주체인 본인에게 통보하였다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

다만, 공공기관이 관련 법정서식 내용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추가 기재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타인의 우편물 개봉과 관련하여 「형법」 제316조(비밀침해)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 19**공문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침해 여부****상담 내용**

공문을 수신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수신자를 일일이 열거하여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침해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공문 수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수신자별로 시행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다수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 다소 소홀한 것으로 사료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의거하여 신고 접수된다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업무담당자 및 해당기관에 시정조치 및 징계 등을 권고 할 수 있음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20

처분결정공고에 기재된 개인정보 유출 여부

Q&A



상담 내용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인터넷)를 할 때 이름과 면허번호,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조건부취소일자 등을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항목만을 공개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 번호 등과 같은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참고로 본 건은 「도로교통법」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통지를 대신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타 법률 및 고시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례 21**부당한 목적으로 열람한 행위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Q&A

**상담 내용**

돈을 빌린 후 변제 기한을 어기자 채권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통해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아낸 후 찾아온 경우 개인정보침해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채권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통해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

「주민등록법」을 살펴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열람이나 교부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

제
4
장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22

공시송달시 첨부한 파일의 유출시 법률 적용 여부

Q&A



상담 내용

홈페이지 공시송달 공고시 첨부한 파일에 기재되어 있던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집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관련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검색엔진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기술적인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참조요망

사례 23**본인확인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요청시 침해 여부****상담 내용**

본인확인(식별)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주민등록번호는 대표적인 고유식별정보로서 불법적 도용 및 남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가장 우려되므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제
4
장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24**사이트관리자 및 연락처 미기재시 법위반 여부****Q&A****상담 내용**

공공기관 사이트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보호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담당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함

즉,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 부서의 연락처(전화, fax, e-mail 등)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요망

사례 25**동의없는 지문정보의 수집에 대한 법위반 여부**

Q&A

**상담 내용**

○○연구소는 비정규직인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는 바, 지문인식 출퇴근 관리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사실이 개인정보침해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연구소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업무인 점, 업무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바이오 정보를 규제하고 있는 명문법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침해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제
4
장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26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발송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여부



질의 내용

○○캠페인 당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고지 없이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발송한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인지 여부를 문의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캠페인 참여에 서명할 당시 웹사이트 회원등록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 침해 사안이 될 수 있음

사례 27**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위반 여부****상담 내용**

가족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출두해야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과 통화 중 본인과 자녀의 개인정보를 언급함. 이는 경찰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대상이 되는 자의 정보외 가족의 정보까지 제공되었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음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28**동사무소의 동명이인 주민등록증 발급 피해****Q&A****상담 내용**

아들과 동명이인인 자가 사진을 제외한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등 이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휴대폰을 개통함. 사용요금이 연체된 사실을 통지 받고 확인한 결과 동사무소의 업무상 과실인 바,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문의함



해당 발급기관으로 잘못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폐기처리를 요청하고, 주민등록업무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발급기관의 상위기관 감사과로 문의 요망

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령 질의 회신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질의 내용

해외이주정보의 일괄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별법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동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타 기관 등에 제공이 가능함

제
4
장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2 시설관리 목적 CCTV구축이 사전협의 제외대상인지 여부

질의 내용

시설관리 목적으로 CCTV구축하여 개인영상 정보파일을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협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Q&A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보유기관의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파일이란 “인사 · 급여 등 업무효과가 기관 내부나 구성원에게만 미치고 기관 외부의 개인 단체에는 미치지 않는 파일”을 의미함

CCTV는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영상장치로 기관 내부의 시설관리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로서 내부적 업무처리만으로 사용된다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질의 내용**

민원용으로 수집된 휴대폰번호로 미납된 납세의무자들에게 납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용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당시의 목적에 맞도록 이용·제공하되, 동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 가능하다 할 것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세무민원용으로 수집된 휴대폰번호로 지방세 납기마감 등의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증대 및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나, 지방세 징수업무는 부담적 성격이 강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인 경우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방적 성격이 있어 정보주체에겐 스팸문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방세 납기안내 등 징수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가급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수집시에도 메시지 발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
4
장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4 교육위원회에게 학교운영위원회명단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내용

Q&A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명단(성명, 개인전화, 주소, 이메일 등)을 요청한 경우 제공 가능 여부



답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학교법」제31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자문기구로, 동 위원회 위원명단 제공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외 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동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당해 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공 가능함

5

사업자정보도 법률적용대상인지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당사자인 사업자의 현황(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 포함)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함

따라서 계약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된 영업소의 주소는 법인 또는 업체 정보로서 동법의 “개인정보”로 적용 받지 않음. 다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고유 식별 개인정보이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음

제
4
장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6

개인정보취급의 재위탁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위탁하면서 우편발송만을 전문적인 아웃소싱업체에서 진행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우편발송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아웃소싱업체에게 재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야 함

수탁기관은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범위 안에서 아웃소싱업체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됨

7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획득 방법



질의 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방법으로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에 의한 방법도 가능한지 여부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동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방법은 정보주체 동의의 실효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업무매뉴얼(행정안전부, ’08. 4, 발간등록번호 : 11-1310000-000719-01)’에 정보주체의 동의방법으로 서명날인에 의한 동의,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 웹사이트상의 동의 등을 예시하고 있음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8

진정인의 인적 사항을 피신청인에게 구두언급시 침해 여부

Q&A



질의 내용

민원담당공무원이 토사유출로 인한 주택손괴 피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초래자인 건축주에게 민원발생통지를 하면서 구두로 민원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됨

따라서 동 사안에서의 법 위반 여부는 당해 보유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목적,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건축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법률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단은 규율하고 있지 않음

9

입영일자, 부대를 알려주는 행위가 침해인지 여부



질의 내용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입영한 지원자에 대하여 입영일자, 입영부대, 세대주성명을 웹서비스 방식으로 열람요청한 경우 세대주 성명을 제외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외 이용 ·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동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당해 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공 가능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적용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병역관련 정보를 이동통신사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제
4
장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10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판단 기준



질의 내용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민원 등 처리 자료의 보유기관은 해당 민원을 직접 처리한 해당기관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관인지 여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보유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의미함

직접 처리하는 업무소관 기관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파일을 직접 작성 또는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동 업무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이 당해 기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기관 해당 시스템 서버에 저장되므로 업무소관 기관이 유지·관리한다고 보기 도 어려움

○○기관은 관련법률에 근거한 시스템 통합 운영 주체로서,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 관리, 업무의 분류 및 재분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동 개인정보를 ‘처리’함은 물론, 각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시스템’에 저장되고 ○○기관이 이를 유지·관리하므로 보유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11

가맹본부 직원 정보 및 사업자의 정보 공개가 위법인지 여부

Q&A



질의 내용

가맹본부 직원의 개인 전자우편 주소, 임원의 성명 · 집전화번호 · 집주소, 가맹점사업자의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등, 가맹본부의 재무재표 작성확인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성명 · 사무실 주소 등, 협력업체의 상호명 · 사업장 소재지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4 제1항은 동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사안의 가맹본부 직원의 개인 전자우편 주소 등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동 사안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법 제2조 제2항은 개인의 식별여부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
4
장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12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지사의 업무처리 또는
피드백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내용

공단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과정에서 수집한 통계자료와 개인 또는 법인의 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사업자관리번호, 사업장명칭)를 응답자의 VOC 해소 또는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사에서 업무처리 또는 피드백에 별도로 이용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동일 기간 내 다른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

따라서 보유목적이 아닌 고객만족도 조사의 목적으로 임의 추출한 개인정보파일을 지사에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13

처리정보의 열람 · 정정 · 삭제 청구시 대리인의 범위

Q&A



질의 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관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수임인(대리인)의 범위가 친족 등 어떤 특정 관계에 한정되는지와 위임장 서명란에 위임자의 인감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대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의 범위에 관하여 친족 등 특정관계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친족관계여부와 상관없이 수임인(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은 위임자 성명 옆에 “서명 또는 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임자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명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임

제
4
장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14

도의원이 주민자치센터별 이용자 성명, 전화번호 요구시 제공 가능 여부



질의 내용

도의원이 서면으로 도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운영실태를 파악코자 해당 주민자치센터별로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외)를 요구한 경우, 2가지 정보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주민자치센터별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는 규정이 있거나 동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의회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법률상 근거 유무, 동법 제3항 각 호의 사유 해당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15

**개인정보파일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을
「주민등록법」시행규칙상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을 작성하는 대신, 동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⑧항의 제13조 및 제14 조 서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서식은 법령상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법 제3조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은 입법취지, 규율내용이 상이한 별개의 법률이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하면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부합하지 않음

제 4 장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16

가족에게 세금체납 내용 및 금액, 신청인의 과거 및
현재 행적 등을 확인, 통보한 것이 법률에서는 침해대상인지 여부

Q&A



질의 내용

신청인이 자동차세 등을 미납하였는데 관련부서 직원들이 신청인의 거주지 주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의 개인적인 세금체납 내용 및 금액, 신청인의 과거 및 현재 행적 등을 취조하고 가족들에게 통보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와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의 행적 등을 취조하고 가족에게 통보한 사실이 동법 제11조 규정상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 없는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본 사안의 관련부서 직원들이 신청인의 행적 등을 취조하고 가족에게 통보한 사실이 동법 제11조 규정상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 없는 처리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

17

관계기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Q&A



질의 내용

관계기관으로부터 2008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 TV수신료 면제자 변동사항, 국가 유공자 등의 수급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 수급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제10조제1항)와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각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목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보의 보유목적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거 유무, 동법 제10조제3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제
4
장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18

개인정보 위탁시 보유중인 개인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질의 내용

행정서비스의 제고 목적으로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수준조사를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성명,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거주 지역)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이란 보유목적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일부를 당해 기관 이외의 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만족수준조사는 사업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으로 보유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건은 보유목적내에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였다고 사료되므로 개인정보를 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① 위탁사실 및 위탁기간 ②수탁자의 명칭, 연락처, ③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④위탁목적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함

더불어, 동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탁시 개인정보가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행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보유 기관이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탁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19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구시 제출 의무



질의 내용

교통질서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의무위반 과태료 과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등록업무연락을 위해 수집한 전화번호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민등록자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른 제공 불가(주민등록법 소관부서 의견)

한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제
4
장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20

행정기관에서 관리되는 장애인내역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와
장애인시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내용

행정기관에서 관리되는 장애인내역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한된 기관”(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에 “명확한 목적”을 위하여 기관에서 요청 시, 개인정보공개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알게 된 장애인의 신상정보(성명, 장애유형, 장애급수, 주소 및 연락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개인정보에 해당됨

동법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보유 목적으로 이용 · 제공할 것과 보유 목적외 이용 ·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와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수행하려는 업무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유목적내인 경우는 동법에 따라 이용 · 제공할 수 있음.

만일, 보유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 · 제공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이용 · 제공할 수 있음

2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내용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재산세 과세기초 자료중 종합부동산세액산정에 필요한 항목만 레이아웃에 의하여 추출하여 전국자료를 구축한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인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는 안 됨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종합부동산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개인정보, 즉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는 경우로서 처리항목 등을 변경, 가공을 통하여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므로 동법 제2조제7호의 보유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제 4 장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22

자동이체 등록세대에 한해서 요금고지, 검침, 안전점검,
자동이체 등 신청안내를 SMS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내용

전입시 확보된 고객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등록세대에 한해서 요금고지 안내, 검침, 안전점검, 자동이체 & E-mail 신청 등을 SMS 발송하여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전입 시 확보된 고객 휴대전화번호 등은 전입자의 도시가스 사용(설치, 개통)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로 판단됨

즉, 동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은 없으나, 관련 SMS가 스팸 등으로 오인 될 수가 있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안전적인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도시가스 사용신청 시점 등에서 SMS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SMS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3

CCTV 설치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질의 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중 법률에서 정의 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 밖의 공공기관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산업연구원, 한국마사회 등을 말하며,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역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CCTV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익목적으로 CCTV가 설치 운영되는 경우 상기 명시 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라도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4
장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24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시 법률보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인정보처리, 데이터 보안, 입출
력 자료의 관리 및 열람, 파기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체결
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입법 취지상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
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임.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과 수탁기관간의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동 법의 수준보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동법 제9조 제1
항, 제2항 근거 개인정보의 안정성확보 등은 보유기관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것으
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부 록

1. 민간부문 개인정보 침해 상담사례
2.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처벌규정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1. 민간부문 개인정보 침해 상담사례

사례 1

이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

Q&A



상담 내용

직접 이용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휴대폰결제로 청구된 경우 대처방안을 문의함



휴대폰번호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일으킨 자에 대한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 02-3939-112)로 문의할 수 있음

또한, 이용하는 이동통신사로 연락을 취하여 ‘소액결제 차단요청’을 하면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 가능함

참고로, 유무선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디지털콘텐츠 구매 · 결제시 발생하는 오과금, 거래명세 일괄 조회, 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피해경보 발령 등 이용자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휴대폰 · 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 요망

1. 민간부문 개인정보 침해 상담사례 ■■■

사례 2**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대처 방법****상담 내용**

휴대폰이 불법 복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처방안을 문의함

**답변**

사용중인 휴대폰의 불법 복제가 의심된다면 우선은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휴대폰 시리얼넘버 및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 요청바람

또한, 복제폰 여부를 확인후 휴대폰 불법 복제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 휴대폰 불법 복제 신고센터 : www.mobilecopy112.or.kr (☎ 02-518-1112)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3**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대처 방법****Q&A****상담 내용**

제3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경우에 대처방안을 문의함

**답변**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게재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또는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린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함

특히,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도용 발생일자가 2006년 9월 25일 이후일 경우에는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경찰서로 신고 가능함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제3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증거확보목적으로 관련 정보의 삭제는 보류할 필요가 있음.

사례 4**블로그 게재 자료로 인한 경찰의 출석요구****상담 내용**

블로그에 자료를 게시한 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에 경찰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경찰 측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개인정보침해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으로는 규제가 곤란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 요망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counsel.copyright.or.kr

99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5 IP정보 등의 접속기록 제공 요구



상담 내용

본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람의 IP 주적 여부를 문의함



답변

IP정보 등의 접속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어 제공 및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

(사안에 따라 IP기록의 제공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의)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사례 6**피싱이 의심되는 메일의 수신시 대처 방법****상담 내용**

본인정보를 입력하라는 피싱메일을 받은 경우에 대처방안을 문의함

**답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사업자등록사항, 연락처, 주소)가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음

피싱 사이트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이 메일로 안내되는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방문하지 말고 해당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기 바람

또한,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취하여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주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 요망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www.krcert.or.kr 02-118 (ARS 1번)

※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내 상시감시센터 02-3460-6401

※ 금융 ISAC : (주간) 02-767-7282, (야간) 02-767-7381

피
록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7

회원탈퇴 사이트로부터 광고메일 수신시 대처 방안

Q&A



상담 내용

사이트에서 회원탈퇴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대처방안을 문의함



답변

탈퇴한 이용자에게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미파기기에 해당될 수 있음

우선, 광고 메일에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기 바라며,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된 메일이라면 그 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www.1336.or.kr로 신고하기 바람

다만, 수신한 메일이 일반적인 광고성 메일이라면 “스팸”메일로 추정되니 해당 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기 바람.

수신거부 이후에도 스팸메일이 전송된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여 주기 바람

※ 불법스팸대응센터 : www.spamcop.or.kr, 1336 (ARS 2번)

사례 8**회원 재가입기간의 제한 및 관련 정보의 보유****상담 내용**

회원 탈퇴 및 가입을 반복하는 이용자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탈퇴 회원의 재가입기간을 제한하고, 탈퇴 회원 정보를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고자 한다면 보유 기간,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

포인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재가입제한에 대한 사실, 보유기간, 보유하는 개인정보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함

다만, 일정기간동안의 가입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기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프록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9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Q&A



상담 내용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해야 하는지를 문의함



답변

예전에는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2007. 1.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7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신설)됨

동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위탁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람

사례 10**사이트 운영 중단시 개인정보의 처리****상담 내용**

사업중단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에 조치방법을 문의함

**답변**

웹사이트 폐쇄나 운영중지로 인해 웹사이트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는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되지 않으므로 수많은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음

따라서, 일정기간 이상 운영이 중지된 사이트 및 폐쇄한 사이트는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인터넷사업자는 사업의 폐지·파산 또는 휴지 등의 이유로 웹사이트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경우에는 보유중인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또한 웹사이트를 폐쇄하기 7일전에 정보주체에게 웹사이트의 폐쇄일시·폐쇄이유와 보유중인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음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사례 11**진료차트에 다른 병명을 영문기재한 경우****Q&A****상담 내용**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치과치료를 위해 상담하던 중 초진 차트에 간 호사가 정신과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영문으로 기록해 놓은 사실을 알려준 바, 치과치료를 위한 의료기록에 정신과 치료내역을 기재한 것이 개인정보 침해 사안인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본건은 의료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건이기 때문에 「의료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업무상의 과실 여부는 ○○병원 자체 감사과나 공단에 질의 요망

1. 민간부문 개인정보 침해 상담사례 ■■■

사례 12**병원진료 예약확인 시 본인확인절차 미비****상담 내용**

병원 진료예약코너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예약 정보(이름/일시/예약 진료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법률상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이메일 또는 연락처 등 예약 시 기재한 정보를 이용하여 예약일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III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2.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처벌규정**

주요 내용	제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변경 또는 말소 (제23조제1항)	10년이하 징역
○ 개인정보 누설,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제23조제2항)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CCTV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 사용 (제23조제3항)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 열람 및 제공받은 자 (제23조제3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2009년 2월 인쇄

2009년 2월 발행

발 행 인 원세훈, 황중연

발 행 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서울시 송파구 종대로 135 IT벤처타워(서관)

TEL. 02-405-5114

URL. <http://www.kisa.or.kr>

인 쇄 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비매품〉

※ 본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이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행정안전부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Tel : 02-2100-3399 www.mopas.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138-803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Tel : 02-4055-1114 www.kisa.or.kr